

*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원칙과 추진 과제 토론회

일시 **2024. 02. 29**(목) 14:00-16: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유튜브 생중계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원칙과 추진 과제 토론회

2.29(목) 오후 2시-5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유튜브생중계_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사전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1.여는발표** <사회> 전정환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 신선 캠페이너 (아름다운재단)
 - 아동양육시설 생활 청소년
 - 자립준비청년

- 2.발제** <좌장> 김선숙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황인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여건 분석과 기본방향
 -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아동·청소년 탈시설 목표 및 추진전략

- 3.토론**
- 변미혜 활동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 이주연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공동주최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용혜인, 장혜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아동인권포럼, 아동탈시설연구모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재단법인 동천,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목 차

■ 인사말

-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
- ◎ 강은미 (녹색정의당 국회의원)10
- ◎ 용혜인 (새진보연합 국회의원)12
- ◎ 장혜영 (녹색정의당 국회의원)14

■ 여는 발표

[사회]전정환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 ◎ 신선 캠페이너 (아름다운재단)18
- ◎ 아동양육시설 생활청소년21
- ◎ 자립준비청년27

■ 발제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탈시설로드맵 방안’

[좌장] 김선숙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여건 분석과 기본방향
/ 황인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30
- ◎ 아동·청소년 탈시설 목표 및 추진전략
/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48

■ 토론

- ◎ 변미혜 활동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62
- ◎ 이주연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70
-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7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질의 답변서
-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88

식 순

수어통역: 한태숙, 신명순

사회 : 전정환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시간	프로그램	세부내용
14:00~14:10	인사말	공동주최 국회의원
14:10~14:40	여는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캠페이너 (아름다운재단) - (아동양육시설 생활청소년) - (자립준비청년)
14:40~15:20	발제1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여건 분석과 기본방향 / 황인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발제2	아동·청소년 탈시설 목표 및 추진전략 /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15:20~16:00	토론1	변미혜 활동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토론2	이주연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3	임아람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토론4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16:00~16:30	종합토론	- 참석자 의견 발표 및 질의응답

인사말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작년 한 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의 수가 3천 75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거나 연고자가 데리고 간 아동의 수를 제외한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2,289명으로, 이들은 대개 양육·보호시설이나 가정 등에 위탁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시설보호아동 인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유니세프(UNICEF)에서 전세계 시설보호아동의 평균 수를 조사해 보았는데 한국은 아동 10만 명당 167명으로 전 세계 평균인 105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출, 장애 등 이유를 불문하고 무분별하게 시설에 떠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적절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유엔에서도 가정에서의 아동 분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가능한 경우 일시적이며 최단기간이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들이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시설 보호를 하는 경우를 위해 시설 보호의 질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대책들은 아이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잃지 않고, 궁극적으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려는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원칙과 추진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탈시설의 원칙을 다시 새겨보고, 그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들이 논의될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너무나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는데 함께 해주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아동인권포럼, 아동탈시설연구모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재단법인 동천, 청소년주거네트워크 온, 그리고 강은미, 용혜인, 장혜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귀한 시간 내어주신 분들 그리고 이 토론회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특별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회의원 강민정

인사말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모든 아동의 가정 기반에서 양육 받아야 하고, 가정과 비슷한 가정위탁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보호아동의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정형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디기만 하고, 시설이 아닌 다른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인지, 아동들의 욕구와 권리가 보장 받는 체계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한, 현행 가정위탁보호 지원체계는 부족하고, 아이의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들은 부족합니다.

아동이 가족과 분리되어 생활하는 건 평생의 고통과 트라우마로 남는 일입니다. 우울감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온전히 가정에서 양육 받을 권리는 당연하고, 아동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보호대상아동의 욕구와 최상의 이익에 맞춘 아동 중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정부의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수립에 꼭 필요한 내용

들이 무엇인지, 어떤 원칙을 갖고 수립해야하는지 풍부하고 심도깊은 논의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 보호와 다양한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제안들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마련해주신 강민정, 용혜인, 장혜영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아동 권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모든 단체 모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토론회의 좌장과 내용을 풍부하게 채워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등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특별히 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고견들을 잘 참고하여, 정부의 아동탈시설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과 다양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보호받고 양육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 보호와 적절한 양육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회의원 강은미

인사말



안녕하세요. 새진보연합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주거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과 교류하며, 아동탈시설연구모임 소식을 듣고 무척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동탈시설연구모임이 2년 가까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오신 결과물이 공유되는 자리라니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해마다 수천 명의 보호아동이 발생하고, 학대로 인한 보호조치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보호아동은 시설에 입소하고, 시설에서 오래, 무사히 살아남아야지만 사회적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2019년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이 집을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폭력과 학대입니다. 집을 나온 청소년의 상당수는 '전과 같은 문제를 겪을까봐', '가정폭력 때문에', '갈 집이 없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시설만을 선택지로 제공할 뿐,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

는 데에는 소극적입니다.

이제는 존엄하게 살고 싶다는 이유로 거리에 내몰리는 아동·청소년의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시설 보호를 넘어,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너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의 관점에서 권리보장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발제에서 제시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양질의 돌봄, 주거 및 자립지원을 포함한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표에 깊이 공감합니다. 가정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치열한 고민으로 이번 토론회를 만들어주신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아동탈시설연구모임을 포함한 모든 공동주최 단위들과 발표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신선 캠페이너님과 청소년 당사자,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동·청소년 탈시설의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회의원 용혜인

인사말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중심에 두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 수립을 위한 원칙과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정의하는 ‘아동의 자유박탈’은 아동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떠날 수 없는 장소에 배치되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보호’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배제된 형태의 삶을 강요받는 시설에서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아동 및 청소년도 자유와 권리가 너무나 손쉽게 제한되고는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자유 박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 모두는 한때 아동이었고 청소년이었습니다. 아동이었던 우리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하고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었던 도움과 지원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는 무사히 성인이 되었습니다. 단 한사람이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듯이, 나와는 달리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탈시설을 비롯

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보호아동의 탈시설로드맵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이 자유와 권리의 완전한 보장을 의미하는 탈시설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은 장애인 탈시설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태도일 것입니다. ‘탈시설’ 용어조차 쓰지 못 하는 현재 상황은 윤석열정부가 장애인과 아동·청소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게끔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가 매우 의미 있고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동·청소년의 탈시설 권리 보장은 곧 모든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아동인권포럼, 아동탈시설연구모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재단법인 동천, 정치하는 엄마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여는발표를 맡아주신 시설 생활 청소년 및 자립준비 청년 등 당사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특별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황인형 변호사님, 강정은 변호사님, 좌장을 맡아주신 김선숙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변미혜 활동가님과 이주연 부연구위원님,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눠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저와 녹색정의당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국회의원 장혜영

여는 발표

여는 발표 1

신 선 (아름다운재단 캠페이너)

아동의 권익을 위해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에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논의의 주체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사자니까 다 옳다고 생각하 않고, 당사자의 생각은 이렇다고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년간 보호 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왔지만 이들을 어떠한 특징을 가진 대상자로 묶기에는 각자가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또한 ‘당사자들’은 이렇다가 아니라, 당사자성을 지닌 개인으로 신선이 생각하고 바라는 이야기라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탈시설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하는 건 무엇인가?’ 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이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로서 아동복지의 현장 속에서 정말 아동에게 최선의 방향으로 결정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매번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동의 보호조치 및 원가정복귀를 담당하고 있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역할의 모호함으로 인해 아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아동의 가정 기반의 양육을 지원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가정의 회복보다는 아동의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원가정의 자립이 필수적

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하기 위해선 아동의 목소리를 더 듣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동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줄 아동보호전담요원,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인력, 생활지도원 등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인력 및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늘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원가정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가족돌봄청(소)년, 가정밖청(소)년 등 다양한 아동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호과정에서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또다른 차별을 경험시키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의 현상들이 아동양육시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체양육으로 인해 아동의 개별 주체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양육시설보다는 가정형 보호로 우리사회가 당연히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또한 우리는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로운 아이’라는 뜻을 가진 ‘고아’라는 단어로 저를 설명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명에서부터 ‘외롭다’라는 뜻이 담긴 단어로 제 존재가 규정됨으로 인해 저는 스스로를 제대로 마주하기도 전부터 동정과 부정의 편견들을 먼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설을 폐지해야 하는 ‘탈시설’이라는 논의가 그 공간을 ‘집’으로 생활하고 있을 아동들에게 우리가 또다른 편견을 만들고는 아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만나온 청년들의 말을 빌리자면, 가정형태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탁가정의 8~90%가 친인척 위탁의 형태이고 친인척이라서 더 가까울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부모 위탁부모를 역부양해야 아동들, 원치 않는 양육으로 눈치를 주는 친인척, 법적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막혀버리는 시스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탈시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결국 그 체계 안에서 ‘아동’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형보호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혹여 ‘아동’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자리처럼 당사자인 아동과 청년들의 의견을 계속 들어주고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주체인 ‘아동’의 생각과 삶이 더 많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여러 토론으로 의견이 나오겠지만, 결국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아동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원가정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이유에서인데, 그렇다면 사회적부모의 역할을 해야 할 국가가 이 문제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생각을 조금 보탠다면 보호아동들은 단순히 사회가 돌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로 인식하고 더 많은 사회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런 논의의 자리에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낸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주체로서 목소리를 표현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나길 기원합니다.

여는 발표 2

(아동양육시설 생활청소년)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시범사업으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제가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며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 설명 드리려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설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동안 늘 누군가와 방을 같이 쓰면서 물건이 사라지거나 제 자리가 어지럽혀지는 등 불편한 일을 종종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만의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원하는 대로 꾸며 나갈 수 있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체 생활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던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에 입소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며 느끼게 된 좋은 점은 첫 번째, 내 공간 속에서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무엇보다 내 방을 꾸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방이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휴식과 나만의 생활 패턴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공동생활가정의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시설에서는 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방을 써야 해서 나만의 공간을 가지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공동생활가정에서는 나만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꾸려나간다는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리, 청소 등을 직접 해보면서 자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에서는 담당 구역 청소, 요리 등을 하며 저만을 위한

게 아니다 보니 ‘단체 생활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한다’ 라는 느낌만 받았지만,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제가 먹을 요리를 하고 제 방을 청소하다 보니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저는 퇴소 후 자립 생활에 대해 어렵듯이 이해하게 되었고 자립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활하며 제 들뜬 마음이 가라앉는 단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생활 소음과 아이들의 대화 소리 등이 저를 방해하여 제가 원했던 공부에 집중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서로 성향이 다른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생활 패턴, 공부 환경이 달라 오롯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런 친구들의 대화 소리가 문을 닫아도 잘 들려 소음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단체 생활을 할 땐 느낄 수 없던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단체 생활을 해왔던 저는 사람들 사이에 속해있는 게 익숙했는데 공동생활가정에서는 각자 방에서 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 얼굴을 마주 앉아 대화를 하기도 어렵고 소소한 대화를 나눌 상대도 없어 재미없는 하루를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도로에서 외진 곳에 위치해있어 여름에 벌레들이 많이 나왔고, 방음이 잘 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자주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하게 생각했던 이러한 단점들이 시간이 지나며 점점 쌓여 본원에 빨리 복귀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좋은 기회로 공동생활가정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좋은 추억을 만들고 도움이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점보

다는 단점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시설에서 생활했던 시간들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모든 걸 만족할 만한 거주지는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는 다시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하는 시설 생활이라 어색한 기분도 들고 적응해 나가는 데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는 발표 2

(아동양육시설 생활청소년)

안녕하세요. 저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영광이라 생각하며 이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할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제가 공동생활가정 시범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생활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이유이고, 둘째, 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생활의 각각 장단점과, 셋째, 제가 어떤 집에 소속하여 살고 싶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길다고 생각하여 공생이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첫째, 공생(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을 선택한 계기는 시설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비행 청소년이라 할 수 있는 룸메이트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룸메이트는 비행 청소년이었기에 술과 담배, 등교 거부, 늦은 귀가, 가출 등의 비행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진로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예민한 상태였고, 룸메이트의 안 좋은 행동과 분위기에 휩싸여 우울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룸메이트의 부정적인 것들이 겹쳐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서 우울한 시간이 지속되고 친구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취미를 찾으려고 했으며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독서나 저의 생각을 글로 표현을 함으로써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환경적인 부분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공생(공동생활가정)이라는 시범사업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공생(공동생활가정)에서 새롭게 출발하자는 마음으로 지원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집단시설과 공생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생활의 장점으로는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 지원이나 프로그램 제안, 장학금, 후원 등의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은 규모 면에서 아이들이 많다 보니 그것에 따라 지원을 받을 기회가 더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가진 동생들과 생활을 하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고, 서로의 다른 면을 존중해주고 인정함으로써 이해심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 같이 생활해야 하니 다양한 의견을 내며 함께 지켜야 할 규칙도 만드는데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집단시설의 단점으로는 개인의 시간이나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아이들과 방 하나를 공유하며 지내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방을 공유해야 하니 전화통화 하기에 한 방에 있는 친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제가 지키고 싶은 사생활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됩니다. 또한 룸메이트가 비행 청소년이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경우에도 방을 옮기거나 숙소의 어린 동생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너무도 쉽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젠 공생(공동생활가정)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생(공동생활가정)의 장점으로는 개인의 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집단시설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방을 공유하는 아이들의 개개인의 특성을 맞출 필요도 없이 자신의 방을 꾸밀 수도 있고 개인의 사생활도 존중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시설에서는 방이 좁아 사용할 수 없는 침대를 사용해 쾌적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시설에서는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과 지내기 때문에 학습시 집중이 어려웠지만 혼자 방을 쓰며 조용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아 성적도 더 좋아졌습니다.

저의 개인 시간이 많아져 저의 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고, 저에 대해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어 제가 좋아하는 취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제가 지냈던 공생의 방은 다른 사람들 말로는 좋은 고시텔처럼 방이 너무 작았다는 것입니다. 배정받은 방의 공간은 둘이서 앉아 얘기하기에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방음이 잘 안돼서 통화 소리가 옆방에 전달되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각자 방이 있다보니 서로 방에서 나오지 않고 개별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어 공생 아이들과의 소통이 단절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속해있던 공생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서 아이들과의 소통은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숙소 담당 선생님들의 일이 너무 많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숙소 선생님들은 항상 행정업무를 다 보시며 저희의 세 끼 식사도 모두 책임지시고 설거지 및 장보기, 식단 관리도 전부 다 숙소 선생님의 몫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은 겨우 짬을 내어 그 시간엔 저희와 대화를 하거나 즐겁게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시설과 공생(공동생활가정)의 장단점까지 말했으니, 이제 마지막인 제가 바라는 집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집은 제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의 구조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이들 간에 위계질서도 중요하지만 배려하며 이해해 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방음이 잘 되는 개인 방과 공동으로 쓰는 공간과, 숙소 선생님들이 많은 업무량에 매일 지나치게 바쁜 것이 아니라 저희들과 더 자주 소통하며 어울려 여행도 가고 다 같이 외출도 하며 즐거운 추억도 많이 쌓는 그런 집을 원합니다.

발표를 끝내며 저에게 발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는 발표 3

(자립준비청년)

별도 자료 참조

[발제 1]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여건 분석과 기본방향

황인형 변호사 / 재단법인 동천

아동·청소년탈시설정책여건과기본방향

CONTENTS

- I. 추진배경
- II. 정책여건
- III. 기본방향

Privileged & Confidential

Privileged & Confidential



I. 추진배경

아동·청소년

Privileged & Confidential

아동의 가정환경과 주거권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

아동이란 -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아동권리협약 1조)

→ 청소년을 포괄하는 개념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서 명시한 성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이미 대안양육의 적용을 받고 있었고, 전환기를 맞이하여 지속적인 돌봄 또는 지원이 필요한 환경 속 청년에게도 적용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28항)

아동복지법상 25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가능(16조의3)

→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아우를 것

국가의 책무

Privileged & Confidential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가능한 한 모든 아동의 가정 기반의 양육지원 및 촉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 향상과 확대를 위한 적절한 인적·재정적·기술적 자원 할당,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한 시설보호 단계적 폐지, 탈가정 아동의 보호, 대안양육 배치를 결정하는 적절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 마련, 대안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보장, 가족 재결합 지원 강화 및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권고

국가의 책무

Privileged & Confidential

가정에서의 아동 분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가능한 경우 일시적이며 최단기간이어야 한다. (유엔총회 결의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14항)

부모에게서 아동을 분리하거나 대안양육에 배치하거나, 또는 가족과의 재결합을 막는 유일한 이유가 재정적·물질적 빈곤, 또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특별하게 빈곤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어서는 안 된다. 대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 적절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유엔총회 결의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15항)

시설양육은 특별히 합당하거나,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아동 개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 (유엔총회 결의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21항)

국가의 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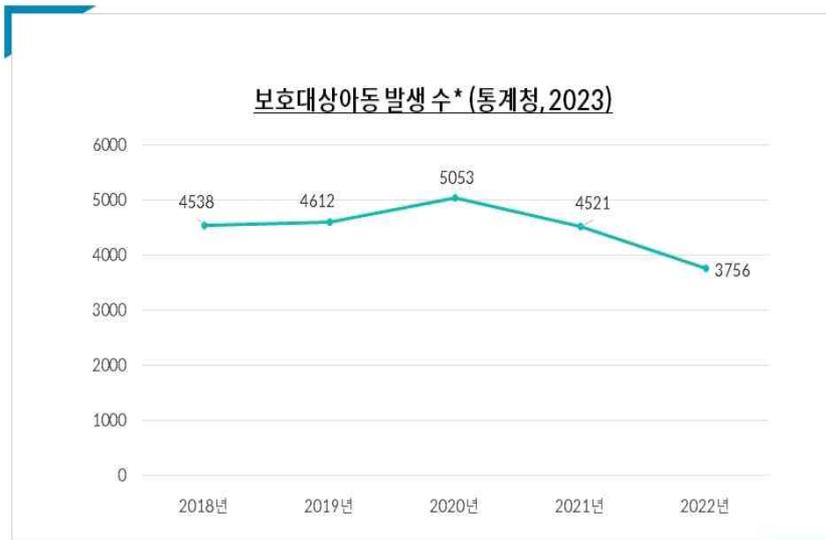
Privileged & Confidential

시설수용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또한 장애아동을 **아동의 가족과 확대가족 또는 입양 형태의 돌봄 체계에 의해 재위탁하는 탈시설화 프로그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재위탁을 바라는 부모 및 여타 확대가족 구성원은 **아동을 다시 가정 환경으로 데려오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원조 및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채택 일반논평 제9호 49항)

가족 분리 배치는 단기일지라도 아동에게 큰 고통, 트라우마,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아동의 시설 배치를 방지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경제적 및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는 가족 기반 배치의 기회가 모든 장애아동에게 주어져야 한다. 원가족내 배치가 대안 가족 구성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지침 46항)

보호대상아동 현황

Privileged & Confidential



*귀가 및 연고자 인도 된 아동의 수 포함

보호대상아동 현황

2022년 발생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비중

(통계청, 2023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보호대상아동 수*	시설입소	가정형 보호	일시보호
아동 수 (명)	2,289	913 (39.88%)	968 (42.28%)	408 (17.82%)
세부항목		양육시설 567 보호치료 12 그룹홈 287 기타 47	입양 52 가정위탁 772 입양전위탁 114	시설 381 가정형 27

*귀가 및 연고자 인도 된 아동의 수 제외

보호대상아동 현황

2022년 보호아동현황자료

(아동복지시설 현황, 공동생활가정 현황,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자료 종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민시위탁 제외)	총계
아동 수 (명)	9,439	2,669	9,312	21,420
비율 (%)	44.07	12.46	43.47	100

보호대상아동 현황

2010 ~ 2022년 전세계 시설보호아동 수

[UNICEF(2023). Children in Residential Care]

지역	시설보호아동 인원 평균 (100,000명 당)
전 세계	105
남아시아	75
북미	77
중남미	86
남동아프리카	98
동아시아/태평양	131
한국	(2020년) 175, (2021년) 176, (2022년) 167

Privileged & Confidential

보호대상아동 현황

장애아동의 비중

(통계청, 2023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호대상 아동 수*	4,583	4,125	3,918	4,047	4,120	3,437	2,289
장애아동 수	132	127	129	142	172	121	110
보호대상 아동 중 비율 (%)	2.88	3.07	3.29	3.5	4.17	3.52	4.8

*귀가 및 연고자 인도 된 아동의 수 제외

Privileged & Confidential

보호대상아동 현황

학대로 인한 보호조치 비율의 계속적 증가 : 2022년 기준 48%

부모빈곤, 실직, 미혼부모·혼외자, 부모이혼 등 : 2022년 기준 30%

→ **예방 가능한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사유, 국가의 적극적 역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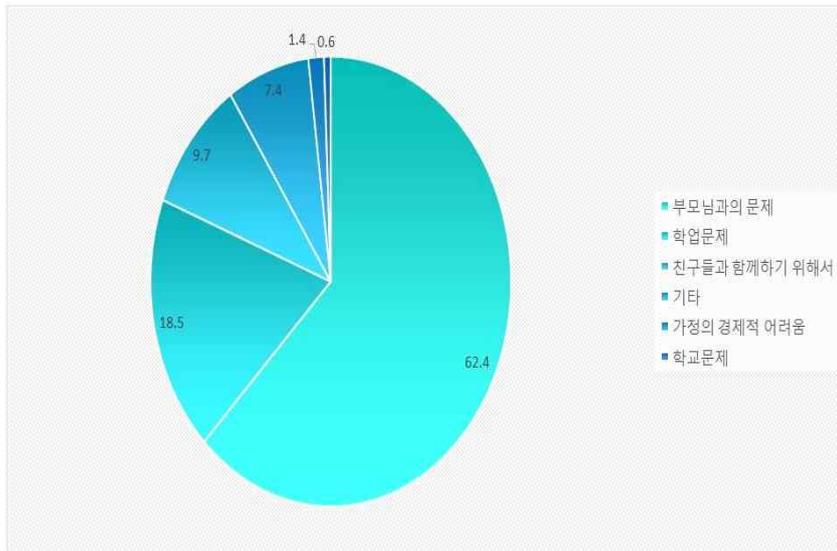
가정위탁 보호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문가정위탁도 확대 중

입양은 영아기 아동에 집중 : 2022년 기준 182명 중 53.6%가 1세 미만

→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의 아동을 위한 영구적 가정환경 확보 필요**

Privileged & Confident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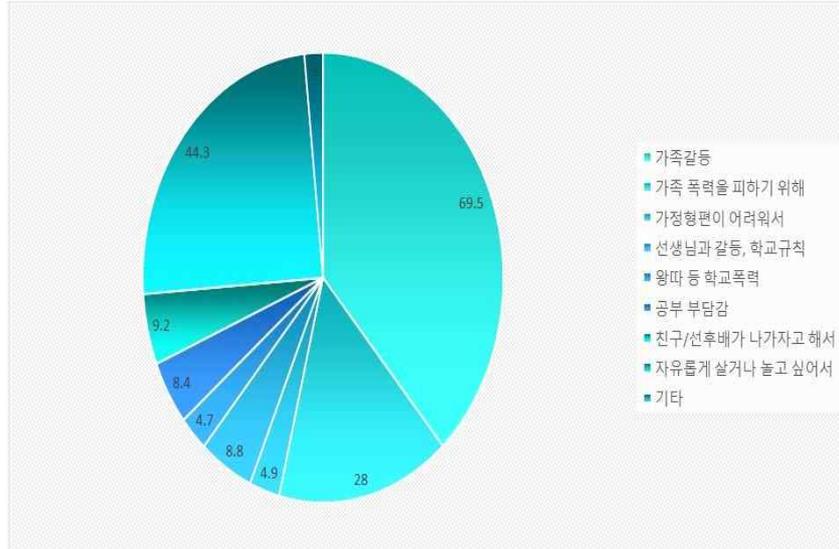
가정밖청소년의 보호 공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청소년 8,592명 대상 조사. 가출의 주된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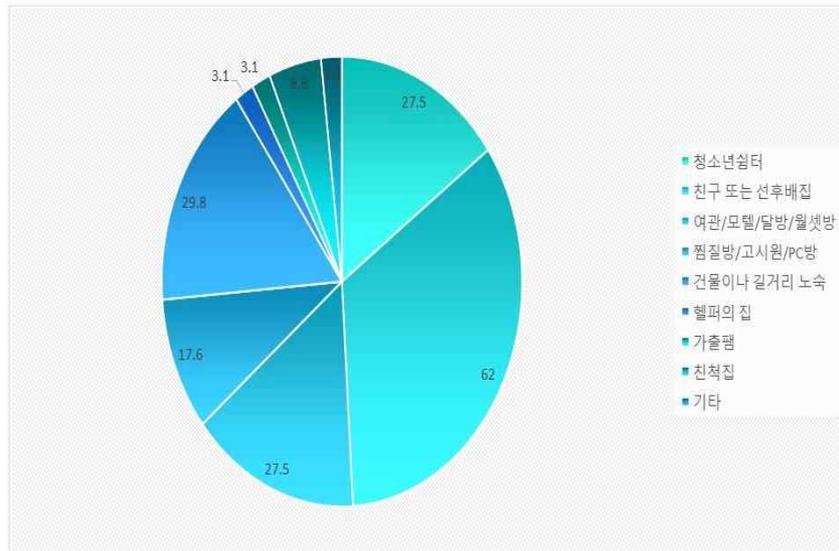
Privileged & Confidential

가정밖청소년의 보호 공백



여성가족부(2022), 위기청소년지원기관 이용자 생활 실태조사
청소년 1,467명 대상 조사, 집을 나오게 된 이유 (복수응답)

가정밖청소년의 보호 공백



여성가족부(2022), 위기청소년지원기관 이용자 생활 실태조사
청소년 1,478명 대상 조사, 가정 밖 생활 중 지냈던 공간 (복수응답)

가정밖청소년의 보호 공백

가출 후 청소년 89.3%는 기관 이용해본 적 없음
6.1%만이 청소년쉼터 이용 경험 있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청소년쉼터와 같은 주거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위기청소년지원기관 이용 경험자 4,203명)

- 부모에게 연락할 것 같아서 (75.7%)
- 쉼터 위치나 이용방법을 몰라서 (32.6%)
-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입소하지 못해서 (29.7%)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2021), 청소년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 결과보고회 자료집

Privileged & Confidential

가정밖청소년의 보호 공백

아동보호체계 바깥의 청소년 - **명확한 실태파악 한계**

2015년 경찰청: 28만 명

2016년 KBS: 20만 ~ 24만 명 (갈 곳 없는 아이들, 가출 그 이후)

2017년 여성가족부: 약 27만 명 (2017. 10. 27. 보도자료)

- **보호 공백에 놓인 거리 청소년의 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
- **비적정 주거, 성착취 등 범죄, 노동 착취 노출**
- **청소년의 생존, 건강과 발달을 위협**

Privileged & Confidential

II.

II. 정책여건분석

아동의 가족지원 정책

-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 → 원가정 보호 및 가정형 보호 명시
- 그러나 여전히 시설 배치의 보호조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자립지원 정책도 아동복지시설 퇴소한 경우에 초점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장 등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규정 → **실무상 이용 X**

- 시설미성년후견법상 시설관계자의 후견인 지정
- 다수 아동을 양육하므로 권한 적정히 행사하기 어려움
 - 실제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아동의 가족지원 정책

Privileged & Confidential

2020년 아동학대 대응 목적 소위 '즉각분리제도' 도입

- 아동의 분리 비율이 늘어나고 분리 후 시설보호가 장기화되는 경향

2023년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

-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을 이유로 익명 출산과 아동 인도 가능
- 2014~2018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의 시설보호율 96.6%
- 시설에서 가정보호로 조치된 아동 13.8%에 불과

2022년 아동기본법안 제정 계획을 발표하기는 하였으나 현재는 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여러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으나

대체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관점의 가족지원 정책은 후퇴하였다고 평가 가능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공적 책임

Privileged & Confidential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 보호조치 결정, 관리, 원가정 복귀를 지자체 책임으로 시행
- 면접교섭 강화, 원가정 관계 중요성에 관한 대리양육자 교육, 자립지원 강화 등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년 ~ 24년) 추진과제

- 가정위탁, 입양과 같은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적극 전환
- 가족 지원 강화

2020년 5월 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 12세 이상 아동 1인실 제공 목표
- 그러나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여타 시설 거주자는 논의에서 제외

개별화 지원 필요한 아동은 여전히 양육시설, 그룹홈, 치료시설 중심으로 정책설계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정책의 지방이양으로 지역격차 발생

주거지원 정책

Privileged & Confidential

2019년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 다자녀 가구, 보호종료아동,쉼터나 자립생활관 보호종료 청소년 대상
-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주거 연계 상담, 돌봄 등 공공서비스 지원계획

→ 현재 시설 거주하거나 탈가정 상황인 미성년 청소년은 지원 대상 아님

→ 보호대상아동과 가정밖청소년 주거권 보장 정책의 격차

2023년 8월 저출산 대책

- 출산가구 주택공급, 금융지원
- 혼인·출산에 유리한 청약제도 개선(소득기준 완화, 청약기회 확대 등)

→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거권 개념을 포괄하지 못함

기존 국내 탈시설 사례와 시사점

Privileged & Confidential

중앙정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전환 정책

- 2017년 거주 전환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
- 2021년 8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2022 ~ 2024)
- 법 개정, 인프라 구축 (2023 ~ 2024)
- 2025년부터 연간 740명 자립지원, 2041년 지역사회 전환 마무리 목표

→ 자립지원 전담조직이 핵심 기능

→ 아동보호체계의 경우, 전국 17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에만 집중. **기능과 범위 확장 필요**

→ 2041년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되는 경우에도 약 2,200명에 대해 24시간 전문서비스 제공 기관 마련하고, 시설 규정 현실화, 일부 거주시설 공간 활용, **시설 소규모화 등 거주시설을 유지하는 관점이 남아 있음**

기존 국내 탈시설 사례와 시사점

Privileged & Confidential

2022년 서대문구 소규모 가정형 시범사업 추진

- 보호아동 10명, 종사자 6명이 1년간 공동가정생활 형태 생활
- 서대문구가 공간 제공, 시설 운영법인이 상주 보호자 인건비 분담
- 2023년 시범사업 마무리

- 아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 아동후원금, 정부지원금 등 시설 환경의 전환을 뒷받침할 자원 부족
- 시설화 문화에 익숙한 아동과 종사자의 관계 변화 촉진에는 역부족

→ 로드맵 추진 과정에

아동·청소년과 종사자의 참여, 이해, 협력, 소통이 매우 중요

보호아동 탈시설 정책

Privileged & Confidential

2022년 7월: 정부 국정과제 46-5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의 일환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2022년 8월 ~ 11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추진방향 설정

2023년 4월: 아동정책 추진방안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2023년 5월 ~ 11월: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수립지원 연구용역

- 10년 이상 중장기 관점에서 이행 시기별 과제 설정
- 양육시설 기능전환·소규모화
-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III

Privileged & Confidential

III. 기본방향

>

아동·청소년 탈시설

아동·청소년의 범위

탈시설의 개념정의

Privileged & Confidential

>

시설보호란

유·무급의 직원 등 가족에 기반하지 않은 집단 환경에서 제공되는 돌봄
소규모 그룹홈, 대규모 거주시설(병원, 치료시설, 기숙학교 포함)까지 포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거주시설보호 개념

- (1) 이용자가 더 넓은 공동체에서 격리되거나 강제로 함께 생활
- (2) 이용자가 내 삶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움
- (3) 시설의 필요가 이용자의 개별화된 욕구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시설화 문화가 형성된 시설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및 보호시설, 건강 증진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재할 및 요양시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관련시설 등 국가/지자체/민간이 운영하는 다양한 거주 시설 유형을 포괄하는 것임

Privileged & Confidential

가정보호,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체계

가정보호: 가정위탁, 친족돌봄, 기타 후견위탁과 같은 가족기반 돌봄을 의미

- 미혼부모, 한부모, 동성부모, 입양가족, 친인척 돌봄, 확대가족, 1인 가구, 동거 가족 포함할 수 있음
-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에서 아동과 보호자가 안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양육이 이루어지는 요소에 초점**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체계

- “아동에 있어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의 핵심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
- “아동·청소년에 대한 동료지원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필수적”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거 + 자율성을 온전히 행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Privileged & Confidential

추진방향

Privileged & Confidential

시설을 정의하는 특정 요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 지원을 타인과 의무적으로 공유함
- 지원 제공 인력에 대한 영향력이 없거나 제한적임
- 지역사회 자립생활로부터의 격리 및 분리
- 일상 결정에 있어 본인의 통제 결여
- 누구와 함께 살지와 관련한 선택권 부족
- 개인의 의지 및 선호와 무관한 일상의 경직성
- 특정한 통제하에 단체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활동을 수행
- 동정적 관점의 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 환경에 관리감독
- 동일한 환경에 장애인수의 불균형

→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보호체계는 이러한 시설화 요소를 배제해야 할 것임

목 표

모든 아동·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양질의 돌봄, 주거 및 자립 지원을 포함한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한다.

추진원칙

Privileged & Confidential

- 1. 가정환경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 아동과 관련해 일하는 모든 관계자는 가정환경에 대한 아동의 권리와 함께 시설보호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다.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둔 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하며, 다양한 가정환경과 가족구성권을 인정한다.
- 2. 아동은 보육·교육시설을 포함해 지역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참여한다.** 의료, 교통, 기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역사회와 분리되지 않은 거주환경에서 직접 실제의 지역사회를 경험하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한다.
- 3.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의 관점에서 권리보장의 접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아동·청소년의 의견청취와 참여권 보장이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탈시설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접근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선택지와 의사소통 창구가 확보되어야 한다. 보호조치의 적절성을 상시 점검하고, 공적 의사결정은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발제 2]

아동·청소년 탈시설 목표 및 추진전략

강정은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아동·청소년 탈시설 목표 및 추진 전략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

2024. 2. 29.

아동탈시설연구모임

강정은 변호사

Copyright(C) DUROO All rights reserved

세부 목표 및 추진 전략

1. 가정 보호: 실효적인 가정환경 보호
2.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보호·지원체계 구축
3. 법·제도적 기반: 아동·청소년 탈시설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4. 주거 목적의 시설 변환: 거주시설의 기능 변환 및 지역사회 거주 촉진
5. 인식 개선: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 실효적인 가정환경 보호

1) 아동·청소년 중심의 가족 지원 정책 강화

■ 위기·취약가정 아동보호를 위한 인력 증원 및 전문성 강화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업무 안정성과 지속성, 전문성 확보
- 아동 중심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아동과 보호자 참여 보장)
-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 연령과 범위 확대

■ 가정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보강

- 시군구 아동보호체계를 시군구 아동·청소년 가족지원체계로 확장 (사전적 예방 기능 강화)
-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족 등을 포함하는 확장된 아동·청소년 가족지원체계 통합적 재편성
- 학대나 방임 위기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인프라 적극 연계한 교육 및 강화된 모니터링 시행
-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중심축으로 사례관리 재구성, 사례관리 기관 간 명확한 업무 분담과 일관된 협력을 위한 체계 정비
- 보육·교육환경에서 가정의 위기 조기 발굴, 부모교육과 아동에 대한 신속한 개입 촉진

1. 실효적인 가정환경 보호

1) 아동·청소년 중심의 가족 지원 정책 강화

■ 아동사법 체계와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연계

- 관계기관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아동사법제도 개입 가능성이 있거나 아동사법제도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배제되지 않는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 시군구 아동·청소년 가족지원체계에서 수사기관, 법원이 인지한 소년에 대한 가족의 위기 정도와 아동·청소년 보호의 적절성 사정 필수적 실시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관계기관(청소년안전망통합지원센터 주축)에서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통계 작성과 모니터링 진행

1. 실효적인 가정환경 보호

2) 아동·청소년의 가족 재결합 지원

■ 아동의 권리로서 면접교섭 보장 및 지원 확충

- 면접교섭은 아동의 권리이자 아동을 보호하는 가족 구성원이 적절한 양육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분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절차, 내용의 면접교섭 계획 및 시행을 집중적 점검, 재결합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면접교섭 모니터링, 사후적 지원 조치 체계적 정비
- 예산 할당 및 지자체에 만남 조력 및 특화·전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 가정의 위기·갈등이 발생한 배경과 아동·청소년의 개별적 특성(장애, 이주배경, 수용자자녀 등)을 고려한 면접교섭 지원 매뉴얼과 맞춤형 프로그램 다양화·전문화
- 면접교섭 설계와 추진 과정 전반에 아동과 그 가족의 참여 보장

1. 실효적인 가정환경 보호

2) 아동·청소년의 가족 재결합 지원

■ 가정의 양육환경 조성

- 개별보호·사례관리에 아동과 보호자가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적절한 가정환경 조성방안 중 점적 계획 및 지역사회 자원 적극 연계
- 재결합 준비 가정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주택 등의 입주 우선권 할당

■ 영구적인 가정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는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 공공 아동·청소년 가족지원체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육, 안정적·지속적 '집(home)'의 확보
- 양육은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지하는 모든 과정
- 가정외보호 공적 개입은 가정복귀(재결합)를 비롯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양, 청소년 독립생활과 후견제도의 연동 등 다양한 영구적 가정환경 보호가 목표

1. 실효적인 가정환경 보호

3) 재결합 아동·청소년의 재분리 예방

■ 양육상황 점검 강화

- 양육상황 점검(아동복지법 제15조의3) 개념을 재결합 가정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적 통합을 지지하는 의미로 재정의 필요
-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둔 '영구적인 가정환경' 조성에 대한 인적·물적 상황 점검 과정
- 재결합 가정은 초기 1년 동안 가족의 상호적응과 관계 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

■ 지역사회 인적 연결망 회복을 위한 사례관리 실질화

- 사례관리의 핵심은 '가정'의 고립 정도 진단, 교육·주거·노동·의료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
- 한시적 프로그램 X,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적 연결망 구축
- 아동·청소년, 가족 및 보육·교육 관계기관을 위한 통합적 자료 개발, 유관기관 협의체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성해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 관련된 협의체 및 회의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비중과 권한이 부여된 개별·집단 참여 보장

2.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보호·지원체계 구축

1) 대안양육의 가정보호 촉진

■ 개념 재정의

-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인척 가정위탁
- 부처 간 업무분장 속 지원의 단절: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 공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아동·청소년을 포섭
- “가정보호” 개념의 불명확성: 입양(영구보호) / 가정위탁(일시보호) / 공동생활가정?
- “가정보호” 아동과 긴밀하고 지속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양육자·조력자가 존재하는 형태
- 대안양육의 목표: 영구적인 가정환경 확보

■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친족돌봄) 지원 강화

- 비공식 친족돌봄, 혈연에만 방점을 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 친족돌봄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위탁가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 친족돌봄 아동 또한 국가가 책임지는 보호대상아동

2.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보호·지원체계 구축

1) 대안양육의 가정보호 촉진

■ 가정위탁 활성화

- 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가 다양하게 논의되고 개발되는 접근이 필요
- 위탁양육자 범위를 확대, 가정위탁보호아동 자립생활 지원 전담인력 배치
- 가정위탁의 목적은 일시보호, 원가정 기능회복에 협력적 역할 수행
- 위탁부모도 양육자와 같은 돌봄지원체계 이용, 위탁부모를 위한 휴가·병가 등의 지원, 지역사회 정기 건강검진 및 치료지원 이용, 위탁부모를 위한 양육상담과 지도프로그램 운영

■ 영구적 가정환경으로서 입양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잇따르는 해외입양 중단 선언
- 아동의 정체성 보존과 공적 보호의 실천으로 해외입양 중단 공표
- 입양 또한 국가가 책임 지는 보편적 아동보호체계로 통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2.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보호·지원체계 구축

2) 6세 미만 아동의 거주시설 입소 우선 금지

<2022. 12. 31. 기준 시설보호아동 연령별 현황,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계(명)	미 취 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타
		0~3세	3~6세					
아동양육시설	10,312	655	1,436	3,806	1,781	1,780	444	410
공동생활가정	2,669	23	213	913	652	600	189	79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낮은 질의 시설 양육은 5세 이하, 3세 이하 아동에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 초래 가능성 지적
- 일본, 원가정양육 원칙 법제화, 미취학 아동의 시설 신규 입소 금지 선언
- 불가리아, 장애아동과 3세 미만 아동의 시설 폐쇄 우선 순위
- 영유아 거주시설 입소 우선 금지 추진, 원가정 보호와 지역사회 기반 거주 전환 확인

2.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보호·지원체계 구축

3) 청소년 자립 지원 및 다양한 주거정책 개발

■ 통합적 자립 지원 서비스

- 어떠한 기관, 서비스 이용 유연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자립 지원 정책
- 부처에 따라 각기 추진되는 자립지원정책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최근 개정)
- 부처의 경계를 넘어 가정 밖의 모든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통합된 하나의 자립지원체계에서 개별화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기본방향 변경
- 자립지원서비스의 대상과 범위 확장 → 지역사회 기반 거주 선택지 다양화 기반 마련
-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사, 지원인력 기준(현재 1:30) 높여 집중적·개별화된 지원 제공

2.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보호·지원체계 구축

3) 청소년 자립 지원 및 다양한 주거정책 개발

■ 청소년 주거권 보장과 대안적 모델 개발

- 일정한 연령 기준으로 청소년 의사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아동·청소년 지원주택(가칭) 등 독립주거 거주, 초기 정착 지원
- 공동주거, 커뮤니티 공간만 공유하는 주거, 파트너·형제 등 가족 유지를 위한 주거 등 다양한 주거모델 개발, 청소년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 전환주거, 자립지원 목적의 주거 등 기간과 서비스 내용 다양하게 개발·구성
-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자립지원전담인력(자립지원전담기관), 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통합 사례관리사, 청소년자립지원요원(청소년자립지원관) 등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기반 주거 지원·유지서비스 강화, 적절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보완

3. 아동·청소년 탈시설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1)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제 정비

■ 아동·청소년 권리 중심의 법적 기반 조성

- ‘시설’ 중심의 보호 → 아동·청소년 ‘권리’ 기반 보호 패러다임 전환
-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에 국가의 가정환경 중심의 보호지원체계 실현을 위한 책무 강화,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기반 거주와 사회적 통합,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등의 원칙을 일관되게 반영

3. 아동·청소년 탈시설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1)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제 정비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실효적 운영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④ 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3. 아동·청소년 탈시설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1)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제 정비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실효적 운영

- 아동·청소년 탈시설은 '가정환경' 보호를 위한 주거·재정·의료·심리·돌봄·교육 지원,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제공, 자립·의사결정 지원 등을 포괄
- '서비스 제공'을 넘어 모든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도모하는 출발점이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집중적인 역할 강화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 아동·청소년 관련 기존 정책조정기구(청소년정책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위계와 업무 분배 정비
- 아동청소년기본법 제정,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상설 사무국 구성 및 인적·물적·재정적 자원 할당, 아동정책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아동정책영향평가와의 연계 도모

3. 아동·청소년 탈시설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1)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제 정비

■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 지역사회 기반 주거 지원·유지 서비스가 현장에서 통합적 작동하도록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체계와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간 협력체계 근거 마련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시설 관련 규정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거주 전환을 촉진하는 전달체계로 개정: 시설 보호의 최후수단성, 거주시설 규모의 단계적 축소와 폐지 등
- 필요할 경우 특별법으로 아동·청소년 탈시설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고려

3. 아동·청소년 탈시설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2) 차별 없는 주거복지 및 통합자립지원체계 마련

■ 주거복지 정책 대상에 '가정 밖 청소년'을 명시적으로 포함

- 주거기본법상 주거지원 필요계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공공임대 등 주거 공급 대상에 가정 밖 청소년을 명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주거약자 지원과 관련된 기존 법령에서 탈시설 아동·청소년이 아울러 고려될 수 있도록 검토보완

■ 자립지원 정책 대상을 확대하며 별도의 제정법률안 마련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범위를 모든 가정 밖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
-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기존 법령에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기반 거주에 관한 권리와 원칙 명시, 기존 전달체계 간 연결을 위한 개정, 아동·청소년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는 통합자립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별도로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3. 아동·청소년 탈시설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3) 아동·청소년의 참여권과 법률행위 능력 보장

■ 탈시설 로드맵 추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청취권 보장

-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절차·결정에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 명시
- 국가는 법률, 행정규칙, 정책방향을 통해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결정, 아동의 시설·가정위탁 등 보호, 양육계획 수립 및 검토, 부모와 가족의 만남 등을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라 결정할 때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표명된 의견을 비중 있게 고려

3. 아동·청소년 탈시설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3) 아동·청소년의 참여권과 법률행위 능력 보장

■ 아동·청소년의 법률행위 능력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 국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이행이 가능한 법률환경 조성, 법적능력 행사에 필요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자신의 욕구와 의사, 의지와 선호도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할 의무 이행
- 법정대리인은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의사결정 '대신' X → '지원' 법정대리권 제도 촘촘하게 보완: 미성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취지 이행
- 민법, 아동복지법, 국내입양특별법, 시설미성년후견법,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지원' 제도 등 다양한 법정대리권 관련 제도 간 관계와 적용 실태 모니터링 유기적 연계 도모: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법정대리인 개인에게 떠맡겨지는 결과 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 강화
- 기존 법령에 근거한 다양한 제도가 실효적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정책 체계적 정비
- 개인 청원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아동·청소년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실천 촉구

4. 거주시설의 기능 변환 및 지역사회 거주 촉진

1) 거주·보호 목적의 시설 유형 폐지

■ 탈시설에 대한 아동·청소년 권리 선언

- 시설 보호 중심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패러다임 전환 목표 로드맵 발표
- 헌법 및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해 모든 형태의 시설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개별적 상황 및 조건에 상관 없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삶을 살아가 권리 보장 (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전제)
- 시설보호 관련 실태조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 법적 구제와 피해배상을 비롯해 향후 아동·청소년의 시설 보호 예방을 위한 전략과 정책 계획 등의 후속조치 포함

4. 거주시설의 기능 변환 및 지역사회 거주 촉진

1) 거주·보호 목적의 시설 유형 폐지

■ 자원 할당의 새로운 접근 및 시설화 투자 중단

- 향후 10년 이내 모든 형태의 시설 유형 폐지 촉진: 재정적 자원의 대상은 '건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의 특정 요구와 효과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아동·청소년이 퇴소할 때마다 기관의 수용 인원과 자원 조달 줄여나가는 방향 추진
- 대규모 시설 현존 상황에서 확실한 목적·목표 토대로 전반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설계·추진
- 공공·민간 관계 없이 새로운 양육시설의 설립·허가 결정은 탈시설화 목표와 전략을 온전히 고려
- 탈시설 국제적 논의는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 폐지, 시설 신규입소 금지 및 환경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지 강조, 시설수용을 '보호조치' 혹은 '선택'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팬데믹 등 긴급상황을 포함한 위기 상황에서도 탈시설 이행 조치를 지속

4. 거주시설의 기능 변환 및 지역사회 거주 촉진

2) 탈시설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주거 기반 구축

■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단계적 감축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영구적 가정환경 보호, 대안적 주거 선택과 자립생활 전환 등의 퇴소 촉진, 단계적으로 정원 축소
- 아동보호, 청소년복지·지원,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거주시설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수립, 정원이 0명에 달하여 폐쇄된 시설이 다시 거주·보호 목적 이용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 마련
-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에 따라 가정환경의 권리 보호 방향으로 추진: 가족 기반이 아닌 거주시설 유지를 정당화·장려하는 기준을 로드맵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게 수정

4. 거주시설의 기능 변환 및 지역사회 거주 촉진

2) 탈시설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주거 기반 구축

■ 주거 지원·유지 서비스 활성화와 시설 종사자의 참여 및 역량 강화 지원

- 아동 주거권 정책 대상을 모든 아동·청소년으로 확대
- 주거 서비스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평등과 비차별 보장하는 것 목적 사회주택, 자기관리 공동주택, 무료 매칭 서비스, 주거차별문제에 대한 지원 포함 (임대기간 법적 보장, 인프라 및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경제성, 접근성과 위치, 문화적 적절성 등 적절한 주거에 대한 최소기준 충족 개발)
- 지역사회에 기반한 물리적 주거환경 확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개별적 상황과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주거 공공성과 안정성 실현 (아동·청소년의 참여 보장)
- 아동과 관계를 맺어온 기존의 인적 자원이 아동·청소년의 권리 옹호를 위한 파트너(협력자)가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불가리아 사례)

5.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인식 증진

■ 아동정책기본계획 반영 및 모니터링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의 내용 반영해 국가가 중장기 정책 방향 공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속
- 제5차 인권정책기본계획 및 제8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연계, 범정부 단위 일관되게 추진

■ 아동·청소년 탈시설 관련 교육 및 홍보

-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 지속, 아동·청소년의 시설 거주 및 자립 경험, 발달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연구 기초로 탈시설에 대한 다양한 방안 모색
- 시설 거주 아동·청소년 대상 탈시설 로드맵의 목표, 절차, 효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를 지속,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범사업 병행
-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아동·청소년 권리 관점에서 탈시설의 의미를 안내, 더 나은 대안양육 방식을 모색하는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
- 모든 대중매체 활용, 대안양육의 원칙과 청소년 주거권 등 탈시설 로드맵의 필요성과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규범 및 근거자료 상시 접근가능한 플랫폼 구축

5.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2) 공공·민간 전달체계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

■ 지역사회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시범사업 실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통한 효과 및 소요예산 분석, 시범사업 결과 상시 공개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참고 기반
- 중앙정부 단위의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 예산 수립 및 기존 자원의 재분배 근거 활용
- 민간 시민사회단체, 기관과 정기적인 협의체 구축, 예방적 접근 강화, 다각적인 지원모델과 프로그램 개발

■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 중앙정부의 아동보호체계, 청소년복지지원체계에서 탈시설 정책 이행 전담인력 확보 (지역 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제공 업무 포괄, 관계기관의 업무협력과 연계에 관한 조정 기능 수행)
-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청소년 탈시설 관련 지역별 정책 현황을 수집·공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로드맵 모니터링과 점검에 반영

마치며

“마지막으로 보호와 자유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해야 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 누구나 보호와 자유 모두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나에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 11. 5. 국회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코기님 (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청소년활동가) 발표문 중

토론 1

변미혜 활동가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토 론 1

“집다운 집”에서 살아가는/갈 권리가 보장되는 탈시설 정책으로

변미혜 활동가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2019년 유엔아동위원회의 권고 이후 4년 만에 아동청소년탈시설로드맵이 마련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기도 했다. 부디 국가에서 제시하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이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오늘 이 논의를 모아가는 자리가 더욱 기대된다.

누구도 시설을 집 삼아 살기는 어렵다. 그것은 아동청소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원가정’이 아니면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 말고는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1950년 전쟁고아들의 긴급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이 시설들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아동복지의 주된 부분 차지하며 예전과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그동안 탈시설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청소년을 통해 시설에서의 삶에 대한 증언을 들어왔다.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나 폭력은 그저 참아야 하는 것”, “시설은 개별성이 존중되기 어렵고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어느날 갑자기 평생을 살아온 시설에서 쫓겨나게 됐다.”, “중간에 시설을 나가면 자립지원이 어렵다면서, 또는 지원 신청 안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냥 참고 살라고 했다.”, “시설에서 10년을 넘게 살았지만, 중도에 퇴소했다고 자립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솔하게 들어왔다. 살던 집을 떠나 이렇게 시설들을 오가며 살 집도, 복지서비스도 없이 보내는 아동청소년들의 시간이 어땠을지 짐작해 보기를 바란다.

1. 아동청소년의 권리로서의 주거와 지원, 국가가 책임져야

- 너무 당연하게도 이번 로드맵에서는 아동청소년 복지체계를 권리 보장의 측면으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며 개인의 주도적 권리, 개인이 누

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라거나, “아동은 아직 미성숙하니까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없다.”라며,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 왔기에 그토록 오랫동안 ‘원가정이 아니면 시설’ 말고는 다른 대안을 상상하지 않았다.

- 아동청소년에게는 어디에 살지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음에도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자는 아동청소년이었다. 폭력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가족이나, 익숙한 공간 또는 지역사회와 이별해야 한다. 그도 아니면 폭력이 여전한 그 집에서 더는 지원 없이 살아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다수의 사람과 수많은 규칙을 지켜야 하는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 아동청소년은 누구와 함께 살지,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고(예를 들어, 쉼터의 물을 흐트러뜨린다고 친한 친구와 동반입소할 수 없어서 거짓말해야 했던 순간들, 원가정 말고는 가족이 아니라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순간들), 내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지원을 들어주고 제공하기 보다는 시설에 거주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지원이 정해져 있었다. 그마저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로부터 학대나 단절의 증명, 일정 기간 시설 거주 등의 어려운 조건이 따라붙었다.

- 심지어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한다는 이유로 시설에 수용되어야 하는 순간에 당사자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다.

-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 함께 살 사람(그동안 위험천만했던 혈연가족과의 삶이 아니어도 내가 좋아하는 다양한 사람과 안전하게 함께 살 수 있는 권리), 다양한 집의 형태(혼자 살지, 공유하며 살지 등) 등을 비롯해, 집에서 살기 위해 원하고 필요한 지원이 개인에게 맞춤 지원이 되도록 로드맵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2. 원가정 복귀나 원가정 보호 중심 지원 체계 문제

- 본 로드맵에서는 아동의 가정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시설이 아닌 안정된 가정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임을 잘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정책이 ‘원가정 복귀’만의 이야기로 회귀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혼인,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가족에서 살아야 한다고 전제한다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는 제도에서 배제된다. 무엇보다 국가나 사회의 책임이 다시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불상사가 반복되는 상황을 주의해야 한다.

-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많은 청소년은 가정폭력, 친족성폭력, 방임과 학대를 더는 견딜 수 없어 탈출하고 있다. 나아질 수 있으려나 기대하며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학교나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도 안되면 경찰에 신고를 해 보기도 하지만,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만 한다면, 계속 참아야 한다고 요구받게 된다. 그건 그동안 아동청소년은 원가정에서 살아야 하며, 부모의 폭력은 훈육의 이름으로 둔갑했던 시간들이 만들어 온 결과이다. 가정

폭력이 발견되었을 때, 그 가정으로부터 누구를 분리해 왔는지에 살펴봐도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가정 내에 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인 친권자는 몇 년 형을 선고받거나 몇 시간 교육이나 상담을 받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해 왔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이 함께 사는 익숙한 그 집과 지역사회에서 아동만이 분리되어 시설에 갇혀야 했다.

- 태어난 가정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들도 있고, 이를 원하는 이들도 있다. 따라서 누군가는 원가정이 계속 안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으로 여겨지거나 아동·청소년이 살아가는 가정이 원가정으로만 수렴하지 않도록, 누구도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제도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 누구나 원가정과 살고 싶어 한다는 것, 원가정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된다는 전제보다 더 섬세한 전제와 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원가정’만 이야기해 왔고, 정책이 원가정 중심으로만 펼쳐졌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소외되고 결핍과 낙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대안 가정이 안전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다양한 존재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더 많은 대안적인 삶들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펼치는 사회로 이행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다. 위탁가정, 혼인이나 혈연 혹은 입양이 아니어도 지역 이웃과 가족을 이뤄서 사는 것, 청소년들이 만드는 또 다른 가정을 지지하는 것 등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청소년에게 주어지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된다면 우리는 굳이 원가정과 시설만 붙잡고 사는 시간에서 해방될 수 있지는 않을까.

- 필자는 청소년들과 대안공동체로 살았던 시간을 통해 함께 사는 것이 이들에게 주는 안정감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것을 꼭 ‘가족’이라 명명하지 않았지만, 그 수평적인 공동체 안에서 얻게 된 만족감과 안정감을 또 다른 청소년과 함께 경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이런 경험 속에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살거나 혹은 함께 살지 않아도 지역사회 안에서 밀접하게 교류하고 서로의 삶을 지지하며 살아가는 네트워크 가족을 만들며 살아가고 싶다(곰곰, 2020, [청소년의 주거권과 만남 토론회])는 희망을 밝힌 증언을 통해서도 새로운 가족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3. 청소년을 위한 현실적인 주거지원 체계 마련 필요

- 내가 함께 살고 싶은 사람과 살며, 나의 삶과 각종 취향을 편히 누릴 수 있는 집을 갖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소망일 것이다. 당연히 이걸 아동·청소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에게 법적 권한을 보장하지 않았고, 사회에서는 이들을 ‘보호받아야 하는 자’로만 규정하여 시설에 분리하는 구조만 유지한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다. 탈시설 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이들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여기며 ‘보호자랑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유일한 전제로 삼고 있기도 하다.

- 아동 중에서도 10대 중후반부터는 꼭 24시간 성인 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안전

한 주거가 우선 필요하기도 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맞는 주거정책의 마련이 이 로드맵에서 강조되어 있는데, 아동을 위한 주거정책에는 ‘주거공간’과 ‘개인별로 필요한 맞춤 지원’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의 형태나 생활 방식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거나 혼자 살고 싶은 욕구들이 반영된 다양한 집의 형태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중요한 것은 홀로 살아가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존재가 근처에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 대표적으로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 모형을 상상해볼 수 있다.

- 이미 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국가 차원의 책임과 제도들을 갖추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탈가정 및 홈리스 청소년법(1974년 제정)’을 통해 홈리스 청소년의 주거 지원을 위한 긴급주거, 전환주거/전환 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16세 이상 홈리스 청소년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과 함께 복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청소년 홈리스를 특별히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포이어(Foyer)’라는 전환주거나 주거지원 모델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16-25세의 청소년들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 계약 등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사례관리사를 배정해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나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는 청소년 홈리스의 주거권을 국가 책임으로 여겨 관련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있다.

- 그러나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은 주거계약이 불가능하다며 주거지원 제도를 시행하지도 않으며 계속 핑계만 대고 있다. 적어도 청소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에 대해 국가가 함께 보증하거나 국가가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방안들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4. 시설 중심의 지원체계가 만들어내는 지원의 공백

1) 아동청소년 개인이 속한 부처가 아닌 이들이 처한 ‘홈리스 상태’에 따라 정부의 지원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 ‘월가정’에서 살 수 없는 아동청소년은 같은 홈리스 상태에 있지만 어떤 관련 부처의 시설과 연결되었느냐에 따라 그 지원은 천차만별이다. 이미 여러 자리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심지어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부처 간 소관 업무 등의 문제를 핑계로 계속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여 만기퇴소를 하게 되는 경우와 중도퇴소하는 경우가 다르고,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에서 2년을 참고 지내는 경우와 중도퇴소하는 경우가 다르다. 여러 일시쉼터를 3년 동안 드나들어도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지내던 곳이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이나 성폭력피해지원시설이냐에 따라서도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자립지원이 너무나도 다르다. 자립 지원이 전혀 없는 시설부터 주거지원, 자립지원, 자립수당,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까지 편차가 심한 것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어떤 부처에 속하느냐가 아닌 청소년의 ‘홈리스 상태’에 주목하여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과 통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일괄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 아닌, 이들에게 필요하거나 요청하는 것들이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전달체계가 아닌 당사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인권을 실현하는 복지가 아닐까.

2) 쉼터에서 2년을 살라니, 임시적인 주거를 떠돌아다녀야 하는 위험한 시간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 ‘폭력이 여전한 가족에게 연락할까 봐’, ‘친구와 함께 입소하기 어렵다고 해서’, ‘수십 개의 규칙을 지켜야지만 지낼 수 있다고 하니’, ‘하루만 이용하더라도 민감한 정보까지 다 제공해야 한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들과 눈치 보며 지내고 싶지 않아서’ 등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들은 끝도 없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 시설이라도,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의 어쩔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함을 방증한다.

- 청소년은 이런 정책에 따라 2년 이상 시설에 거주해야만 정부의 주거 및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계산 방식이 매우 보수적인 것을 차치하더라도) 일시적인 긴급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임시적인 주거시설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청소년에게 주거지원이 필요한지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 주거취약계층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비적정 주거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생각해 보더라도 청소년의 주거위기 상황에 대해 매우 잔인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쉼터에 거주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경우, 결국 청소년들은 십대 시기를 거리에서 보내야 한다.

- 주거뿐만 아니라 각종 필요한 지원 역시 자립 의지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삶을 살 의지가 있어야지만 살 자격이 있다는 논리다. 필요하거나 요청해서의 지원이 아닌 조건부 지원은 불안정하거나 무기력한 상황을 위협으로 몰고가는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3) 아동복지법 제38조의 개정이 아동·청소년을 위협으로 몰고가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지침 마련 필요

- 지난해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의 개정으로 시설을 중도퇴소하는 이들 역시 주거지원을 포함한 자립지원이 가능해졌다. 반가운 소식이었다. 시설을 더 이상 집으로 삼아 살기 어려워져 탈출하는 이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꾸역꾸역 살아야 하는 이들, 이런저런 시설을 떠돌며 임시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이들에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기회였기 때문이다(물론 이 역시 아동양육시설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2024. 2. 7.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정된 법은 15세 이후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이들에게 적용되나, 18세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15세에 시설을 나오게 되는 청소년은 18세까지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에게 3년 동안 여러 시설을 드나들거나, 거리에서 불안정한 상황을 개인이 감당하라는 것일까. 청소년의 위태로운 현실에 대해 국가가 청소년을 홀로 두지 않겠다는 반가운 법 개정 소식이었기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많이 아쉽다.

5. 정책을 현실의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 2022년에 자립준비청년 두 분이 숨지는 슬픈 일이 있었다. 이들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단편적으로 현금과 현물성 지원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식의 입장에서 시작되었다.

-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전담기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통화를 겨우 한다. 쉼터에서 살았어야지 받을 수 있는 청소년자립지원 또한 조건부 지원일 수밖에 없다. 살아온 내내 '아동·청소년이기에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거나, '위험하니까',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며 시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왔다. 그렇게도 수동적으로 살라고 했던 삶을 살던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가능해진 듯 다 각자도생하라는 요구는, 이들에게 무시무시한 세상에 홀로 내팽겨쳐지는 것 같았을 것이다.

-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이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서로 돌보는 사회가 개개인의 몫으로 남지 않도록, 지역사회로 나왔을 때 아동·청소년이 외롭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많은 사람 역시 만들어내야 하는 정책이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다.

토론 2

이주연 부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 론 2

아동·청소년 탈시설의 정책여건 분석과 기본방향,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한 토론

이주연 부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국가적 책무로서 아동청소년 보호

가. 양질의 보호를 위한 국가책임성 강화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여건과 기본방향」 발제문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무가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단순히 보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하며,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들까지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는 국가의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보호의 여부 뿐 아니라 보호의 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제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설보호는 가정보호가 아동에게 주는 신뢰와 애착, 돌봄과 애정의 지속성 등으로 구성되는 정서적 환경의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분리보호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이미 원가정 분리로 인한 상실과 트라우마에 더하여, 깊은 애착관계를 맺기 어려운 환경에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으로 노출됩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상실의 경험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발달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은 다수의 국내외 연구결과에서도 밝혀져 왔습니다. 아동보호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치중하는 탈시설의 방향은 정서적 환경이라는 보호의 질적 요소를 간과하는 것이며, 서비스 공급자적 입장에서 용이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의 최우선 이익이 보장될 수 있기 위하여, 최우선 이익의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는 양질의 가정보호가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책임성 강화

아동청소년의 탈시설에 대한 담론에 숨겨진 가정은 모든 아동청소년이 시설(혹은 가정 보호)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제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가정 밖 청소년들은 공공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탈시설의 논의에 앞서, 이들의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 그리고 이들을 공공의 아동청소년 보호 테두리 안으로 유

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수가 원가정이나 친부모와의 갈등으로 가출하였다는 발제자의 지적은 이들의 가정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원가정과 친부모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에 대한 독립거주(independent living)가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원가정과 관계회복을 지원하고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독립거주는 이들의 최우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안이 아니라 선택지에 남아있는 하나뿐인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탈시설과 가정보호의 개념

시설보호와 가정보호를 어떻게 구분하고 정책적으로 개념화할 것인가에 대해 국내에서 일관된 개념정의와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가정보호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기준을 참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제적으로(유엔, 유니세프 등) 가정형 보호나 가정보호라는 표현보다는 ‘부모보호’(parental care), ‘가정기반 보호’(family-based care), ‘가정과 같은 보호’(family-like care), ‘시설보호’(residential care) 등으로 구분합니다(이주연 외, 2023 재인용; UNGA, 2010). 부모보호에는 원가정보호와 입양이, 가정기반보호에는 가정위탁, 친족돌봄, 후견보호 등이, 시설보호에는 양육시설, 그룹홈, 생활시설과 가정과 같은 보호에 속하는 소규모의 그룹홈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아동청소년의 탈시설은 부모보호-가정기반보호 사이의 범위에서 보호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소규모화된 그룹홈-대규모시설은 시설보호이므로 탈시설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탈시설과 가정보호의 개념화 논의에 있어서 보호의 영구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발제자께서도 강조하셨듯이 국가가 제공하는 아동보호체계는 아동청소년이 영구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하는데요. 국외에서도 보호계획 시에 영구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던 기간 동안 위탁가정과 시설 등으로 표류하는 아동청소년의 어려움이 심각하게 쟁점화 되었고, 이를 보완하고자 보호의 영구성 확보를 최우선적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가정외보호 아동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원가정 복귀를 위한 가정기능강화를 목표로 일정 시한을 두고 집중적인 사례관리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한이 경과하는 데에도 부모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친권박탈을 통해 입양이나 친족돌봄, 후견보호 등으로 차선의 영구성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이주연 외, 2023). 이러한 선협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영구성을 고려하지 않는 가정외 보호는 탈시설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탈시설에 있어서 아동 특성의 고려

가. 아동의 연령

발제자께서도 지적해주셨듯이, 선행 연구결과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시설보호의 질적 수준과 무관하게 그 부정적인 영향이 드러나며, 시설보호가 장기화될수록 부정적 결과가 강화되고, 시설보호 아동을 탈시설하였을 때, 아동의 발달결과가 호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주연 외, 2023 재인용; Bakermans-Kranenburg et al, 2011; van Ijzendoorn et al., 2020).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영유아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설보호가 아닌 가정보호로 우선 보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연령의 아동들만이 탈시설의 주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시설보호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그만큼 시설보호의 부정적 영향이 강화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으므로, 어린 연령의 아동들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설에서 보호된 아동청소년들에게도 가정보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시설아동의 가정보호로의 전환을 위하여 시설 내에 상주하는 가정보호 연계 전문인력을 두고, 시설아동을 가정위탁이나 원가정 복귀 등으로 전환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와 시설차원에서 가정보호가 시설보호보다 아동에게 유익하다는 가치가 공유되고, 이를 위한 변화의 필요성이 공감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국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 아동의 정서·인지·행동 특성 고려

발제문에서 원가정에서 분리된 장애아동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보호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해주신 데에 더하여 장애아동 뿐 아니라 정서·인지·행동 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여건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행연구에서 공공의 가정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장애아동, 정서·인지·행동 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 등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탁가정이 매우 드물며, 아동시설에서도 적절히 보호되기 어려워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시설로 보호되기도 하고, 정서행동 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경우 청소년쉼터 등으로 보호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아동일수록 가정보호가 필요하나 최근에 제도화된 전문위탁가정은 아직 소수만이 운영되고 있어, 욕구가 있는 아동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을 보호의 사각지대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치료적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탁부모의 전문성 제고, 규모 확충 등이 요구됩니다. 특히 이들을 원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의 분리 위기에 있는 가정에 대한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4. 탈시설을 위한 인프라 강화

아동의 보호 및 배치를 담당하는 지자체 인력 확충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더불어 가정보호를 위한 사례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사례관리서비스를 보다 더 내실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가정외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가정위탁 보호기간은 평균 8년7개월에 달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이렇듯 가정위탁 보호가 장기화되면, 위탁부모의 연령의 고령화와 더불어 위탁가정 또한 위기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위기를 모니터링하고 가정보호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과 더불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 3

임아람 과장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토 론 3

아동·청소년 탈시설의 정책여건 분석과 기본방향,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한 토론

임아람 과장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장 임아람입니다.

먼저 이렇게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자립 등을 위해
연구와 활동으로 애써주시는 전문가 및 활동가 여러분,

○ 그리고,

입법 영역에서 아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 이하 보좌관, 비서관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우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 및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16년 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정책 추진방안, 국정과제 등을 통해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아래 아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수립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사전연구용역, 본연구용역을 마치고 연구결과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기반으로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자립준비청년 등이 참여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탈시설’은
본인들의 집을 부정하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으로 로드맵 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수립되고 있는 로드맵의 기본적 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원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와 책임성 제고를 통하여 분리보호되는 아동을 줄이고, 보호조치가 될 시 신속한 원가정 재결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둘째로, 부득이하게 원가정과 분리되어 보호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가정형 보호의 형태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입양, 가정위탁과 같은 제도의 활성화와 기존의 시설, 공동생활가정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시설의 기능전환을 통해 일시보호 중심의 소규모화, 특화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좀 더 자세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출산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전체 아동의 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향후 10년 내에는 보호대상아동 수가 현재의 약 7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 학대피해, 장애 등의 특수육구 아동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시설은 중장기적으로 일시보호의 원칙 하에 돌봄, 자립지원 등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는 시설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말씀드린 입양, 가정위탁과 같은 가정형 보호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면, 시설 거주 비중은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감소할거라 전망합니다. 이럴 경우 시설이 보유한 건물 등 자산의 처분에 관한 문제, 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조치와 같은 점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눠지는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이 아동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선택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답변서]

[탈시설 로드맵 국정과제 이행]

1-1. 국정과제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과 관련해,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추진방향 설정(2022)” 및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수립지원(2023)” 연구용역 수행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로드맵의 단계별 이행 계획은 무엇입니까? 로드맵 발표 계획은 어떠합니까?

- '23년 로드맵 수립지원 연구용역 종료 이후 연구용역 보고서의 최종 마무리 및 이에 기반한 로드맵 수립이 이뤄지고 있음
- 로드맵 수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드리기 어려우나, 첫째, 원가정 지원을 통한 분리보호 감소 및 재결합 유도, 둘째, 분리보호 시 가정형 보호에 따른 단기적 보호, 셋째, 시설의 기능 전환으로 일시보호, 치료재활 중심의 소규모화, 특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
- '24년 상반기 중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로드맵 내 각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며, 발표 등의 시점 또한 수립시점에 맞춰 확정될 예정.

1-2. ‘보호아동의 탈시설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정형 보호 확대’ 정책을 입안·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 경험 당사자 또는 당사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기 위한 계획은 어떠합니까?

-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용역, 본연구용역에서 공통적으로 FGI 연구를 통해 시설 경험 당사자, 종사자, 부모,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해 광범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하여 포괄적인 정책 개선점을 도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이러한 연구용역 외에도, 특히 가정형 보호에서는 가정위탁 위탁부모 모임, 위탁아동 정책참여단, 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등 다양한 정책 의견수렴이 매해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공무원,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보호아동, 자립준비 청년 등과 주기적인 간담회, 방문 등을 통해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임

1-3. 아동탈시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아동, 이주아동, 성소수자 아동, 학대피해아동 등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위한 정책이나 보호체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정책은 영구성(영구적인 양육/가정환경)에 대한 보편적 욕구를 가진 보호아동을

위한 탈시설 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아동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특수욕구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며,
 - 시설 입소의 경우, ‘치료재활 지원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사업’ 등을 통해 맞춤형 치료재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음
 - ※ ‘아동복지시설 치료재활 지원사업’ : 심리·정서·인지·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시설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심리검사와 맞춤형 치료재활 서비스 비용 지원(23년 치료재활 사업 지원아동 1,6,96명)
 - 가정위탁의 경우, 전문가정위탁 제도를 도입(' 21년)하여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토록하고 있으며, 위탁 부모의 교육, 책정 등을 일반가정위탁과 달리 설계·운영하고 ‘전문아동보호비’를 지급하고 있음

[자료수집]

2-1. 부처의 경계를 넘어 생활시설(거주시설)*에 생활하는 아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통계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그 외에도 타 부처 관할의 기관을 포함해 아동·청소년이 주거 목적으로 생활하는 다양한 시설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어떻게 연계하고 활용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시설(거주시설)이란, 아동이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시설 등을 모두 포함함)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의 아동 현황은 매년 말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대상 시설은 동시스템을 통해 입소자 현황 등 통계 활용 가능하나, 동시스템은 시설 이용자 관리, 보조금 지급 신청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에서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필수항목 외 추가적인 시설 정보는 지자체를 통한 수기 취합을 병행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통계 자료(아동복지시설 기준)

소관 지자체, 시설 유형, 설치일자, 설치주체, 시설 주소(연락처), 시설 보호아동현황(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 입·퇴소사유, 종사자 현황 등

2-2. 향후 공공·민간 위탁의 시설보호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통합 데이터 체계를 구축할 필요와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말씀대로,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기 위해, 보호조치 중이거나 종료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실태파악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복지부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보호자 및 청년을 대상으로 1년을 주기로 동일집단 반복조사 방식으로 ‘아동보호통합패널조사’를 진행 중

- 이를 통해, 아동과 청년의 신체·마음건강, 일상, 서비스 이용 경험 만족도, 향후 정책육구 등을 파악하고, 통계 데이터를 구축·관리·활용 중에 있음

[정책조정]

3-1. 학대 피해를 사유로 가정 밖으로 나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을 위한 정책은 어떠합니까?

○ 유선으로 말씀드린바 타 부처의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청소년 정책 담당부서의 답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2. 현재의 정책에 한계가 있다면,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논의 현황은 어떠합니까?

○ 유선으로 말씀드린바 타 부처의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청소년 정책 담당부서의 답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3.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자립지원대상자로 포함되었는데, 청소년복지시설,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시설에 입소했던 아동·청소년도 자립지원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의 ‘18세 미만 보호종료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를 '15세 이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종료된 경우' 로 구체화하여 법 시행일인 ' 24년 2월 9일부터 적용 중임

-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15세 이후 청소년복지시설,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하게 되어 아동복지법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청소년도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의 대상에 포함

[원가정 보호]

4-1. 원가정양육 원칙(가정환경에 대한 아동 권리, 「아동복지법」 제4조제3항 등)의 이행을 위해 1) 아동이 시설에서 보호되기 전에 가족의 기능 회복을 위한 예방적 개입 및 지원, 2) 아동의 가족 재결합을 위한 지원(면접교섭 지원 포함), 3) 재결합 아동의 재분리 예방을 위한 정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1) 아동의 분리보호 이전의 경우, 읍면동의 아동복지 담당자는 보호대상아동이 발견되는 경우, 초기상담을 수행하고 각 지자체의 아동복지 담당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으나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연계하거나, 해당 가구에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고난도 사례라고 판단한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연계토록 규정하고 있음
- 2) 분리보호 이후 아동의 재결합을 위해서는, 양육상황 점검을 통해 아동의 분리보호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상황, 원가정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호 조치 및 서비스 계획 변경 필요성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자체(시·군·구)는 보호조치아동의 면접교섭 지원 계획을 수립 하고, 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면접교섭 이행결과에 대하여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중
- 3) 보호종료 이후에는 아동의 가정 방문 및 서비스기관(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청소년복지기관 등) 연계 등 해당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지도·관리 제공을 통해 재분리 예방 및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

4-2. 보호대상아동이나 지원대상아동, 또는 자녀 양육 한부모가정 등 아동·청소년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 현황은 어떠합니까?

- 주거지원 소관부서(국토교통부)의 정확한 답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의 형태로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임대료 무상지원 및 감면,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임대주택 보증금 감면,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자립준비청년(아동보호조치 종료 및 예정자)에 대해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임대주택 거주 등 청년임대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아동보호체계]

5-1. 대안적 양육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과정(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결정, 아동의 시설 등 보호, 양육계획 수립 계획 검토, 면접교섭 지원 등)에서 아동의 의견이 청취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정책은 무엇이며, 그 이행 현황은 어떠합니까?

- 아동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아동복지법 제4조)하고 있으며,
 - 구체적으로, 아동분야사업안내 지침에서는 아동보호서비스 절차에서 ‘1단계: 상담/조사/사정’ 단계에서 아동의 기초정보를 파악하고 상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고 보호서비스 제공방향을 사정함
 - 지침에 따라, 모든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 전에 상담/조사/사정의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며, ‘22년 최종보호조치 아동은 2,289명임(일시보호아동 포함)

5-2.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가정보호’ 혹은 ‘가정형보호’ 는 어떻게 정의(개념화)하고 있습니까?

- ‘2024 아동분야사업안내’에 따르면, 아동을 불가피하게 분리 보호하는 경우, 아동의 개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최소한으로만 제한하는 순서로 대안양육 유형을 결정하여야 함
 - 즉, 분리보호 형태 결정 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

정위탁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형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

5-3. 2024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시범사업>의 후견인의 주요 역할은 무엇이며, 아동의 양육·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조력자로서 역할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습니까?

○ 아동복지정책과(공공후견인 소관)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 시설보호를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시설보호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침은 어떠합니까?

○ '2024 아동분야사업안내'에 따르면, 복지급여 연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가정 및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이 어렵거나 위탁가정의 부족 등 가정위탁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이 분리보호 시 원가정의 보호기관(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입양 등)과 협업하여 아동에 대한 서비스계획을 수립 및 제공하여 그 기간을 최소화 하고자 하며,

- 주기적 양육상황 점검을 통해, 아동의 분리보호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상황, 원가정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의 보호조치 및 서비스 계획 변경 필요성 검토하도록 함

5-5. 아동·청소년이 시설에 배치되었을 경우, 가정 복귀나 다른 보호조치로 변경하기 위한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모니터링의 주체와 빈도, 방법과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 주기적 양육상황 점검을 통해, 아동의 분리보호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상황, 원가정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의 보호조치 및 서비스 계획 변경 필요성 검토하도록 함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그 주체이며, 최소 3개월의 주기로 아동양육상황과 원가정을 점검하여, 원가정 복귀, 시설 전원, 입양, 위탁전환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기타]

6. 위 질의사항 외에 <아동·청소년 탈시설 목표 및 추진전략>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 추진전략과 관련해 각 부처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은 현재 본연구용역을 마치고, 연구결과 및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 중에 있으며, 그 수립방향으로 첫째, 원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와 책임성 제고를 통하여 분리보호되는 아동을 줄이고, 보호조치가 될 시 신속한 원가정 재결합을 유도함
 - 둘째로, 부득이하게 원가정과 분리되어 보호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가정형 보호의 형태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입양, 가정위탁과 같은 제도의 활성화와 기존의 시설, 공동생활가정의 개선 추진
 - 마지막으로, 시설의 기능전환을 통해 일시보호, 치료재활 중심의 소규모화, 특화 등 추진
- 로드맵의 경우 '24년 상반기 내에 수립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할 예정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탈시설 로드맵 국정과제 이행]

1-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최종견해에서 “단계적인 탈시설 계획 수립”을 권고 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예정되었던 제7차 국가보고서는 약식보고절차로 전환되면서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1년을 전후로 준비되어야 하는 만큼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권고에 어떠한 진전과 성과, 제한점이 있었는지 간략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아동권리과(탈시설, 가정형 거주 전환 소관)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아동의 개인 청원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제3선택의정서) 비준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이자, 국제적으로 촉구되는 의제입니다. “제3선택의정서 가입 추진”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권고와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아동권리침해에 대해 국내법적 구제절차를 거친 후 아동이 아동권리위원회에 직접 구제 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국내 민사적 권리구제절차에서 미성년자의 법률 및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선택의정서 비준의 국내법 충돌에 대한 사법적 검토 중

* 민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55조

○ 보건복지부는 동 선택의정서의 목적인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아동총회 운영을 통한 아동 결의문채택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결과 보고 의무화, △온라인상 아동의견 표명창구 설치·운영 등을 실시 중임

1-3. 국정과제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등 아동탈시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아동, 이주아동, 성소수자 아동, 학대피해아동 등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위한 정책이나 보호체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정책은 영구성(영구적인 양육/가정환경)에 대한 보편적 욕구를 가진 보호아동을 위한 탈시설 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아동권리과(탈시설, 가정형 거주 전환 소관)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조정]

2-1. 부처의 경계를 넘은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탈시설 과제 이행을 위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아동복지법」 제10조)의 역할은 무엇이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실효적 이행을 위한 계획은 어떠한가?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정책 관련 안전에 대하여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 및 협조를 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정책시행계획 심의, 아동 관련 대책 현황 보고 등을 위하여 매년 1~2회 개최되고 있으며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심의가 필요한 아동 관련 안전이 생길 시 추가적으로 개최 가능

2-2.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의 안전은 어떻게 조정·연계되며,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가부장관)는 각각 청소년·아동에 관한 정책 관련 안전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 각 대상의 연령*에 따라 중요도가 높은 정책 제도 및 대책 마련 시** 각 위원회에서 안전 보고 및 협의(복지부차관, 여가부장관은 각각 양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 * 아동 연령: 18세 미만, 청소년 연령: 9세 이상 24세 이하
- ** (아동) 아동학대 대응체계, 아동총회 결과 등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방안, 청소년 도박 차단 및 치유 지원 현황 등

2-3.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청소년 탈시설 과제는 어떻게 고려되고 있습니까?

-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보호 강화를 위한 원가정 복귀 지원 확대, 가정위탁 지원 확대 등 과제와 함께 양육시설의 탈시설화를 위한 과제 추가 발굴 추진 예정

2-4. 중앙정부 단위의 아동보호 정책 예산을 마련해 보호대상아동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지역 간 격차 없이 아동보호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사업비 국비 지원 중('24년 약 210억)
- 이 외에도 △입양대상아동 보호비('24년 22억), △입양아동 양육수당('24년 184억), △입양 축하금(1인 2백만원, '24년 2.4억), △전문가정위탁 아동 보호비('24년 29억)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 지속 지원 중

[원가정 보호]

3-1. 원가정양육 원칙(가정환경에 대한 아동 권리, 「아동복지법」 제4조제3항)의 이행을 위해 1) 아동이 시설에서 보호되기 전에 가족의 기능 회복을 위한 예방적 개입 및 지원 및 2) 아동의 가정 재결합을 위한 지원(면접교섭 지원 포함), 3) 재결합 아동의 재분리 예방을 위한 정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 1) 아동의 보호 의뢰가 들어온 경우, 초기 상담을 통해 원가정 보호자의 양육의지를 파악, 부모상담·양육지원·복지서비스 제공·경제적 지원 등으로 가정해체 예방이 가능할 경우에는 읍면동 또는 드림스타트로 우선 연계토록 하고 있음
 - 2) 지자체에서 분기별로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할 때 보호체계 안에서 아동과 원가정 보호자와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상시 지원함
 - 3) 원가정으로 복귀하여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종료 이후 1년간 4회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음

3-2. 보건복지부가 이해하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가정보호’ 혹은 ‘가정형보호’의 정의(개념화)하는 무엇입니까?

- 아동권리와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체계]

4-1. 보호대상아동의 시설보호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특히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중 미혼부모·혼외자, 부모이혼, 부모빈곤·실직 등의 사

유로 보호조치되는 아동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 현황과 계획은 어떠합니까?

- 매년 신규 발생하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 '20년 33.8% → '21년 36.5% → '22년 43.5%

- 그간 미혼부의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각종 복지·의료서비스의 지급조건을 완화*하여 아동이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으며('23.2월),

* 건보자격 부여, 아동수당·부모급여·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 이와 함께,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두텁고 전문적인 상담·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통과되어 올해 7월 19일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복지부), △저소득·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여가부)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

4-2. 아동보호조치 가운데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현황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되는 아동이 국가의 보호 체계에 있는 아동으로서 위탁가정(특히 친인척 위탁가정) 아동과 차별없이 지원받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현재 친인척 보호되는 아동이 가정위탁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위탁가정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요건(교육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한 충족토록 노력

4-3. 2024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시범사업>의 후견인의 주요 역할은 무엇이며, 아동의 양육·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조력자로서 역할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습니까?

- 보호아동의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친권자의 역할을 수행
-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후견인을 양성하여 전문적 후견이 필요한 보호아동에게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고, 후견인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지원할 계획임

토론 4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자료수집]

1-1. 가정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의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가정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으로 명명되는 청소년의 현황을 누락 없이 파악하기 위한 통계체계는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개선 계획이 있습니까?

○ (가정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은 자신의 거주환경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고, 가정·학교·사회 등 가정 밖을 넘나들며 청소년쉼터 등의 입·퇴소가 잦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

- 또한 원가정에서 이탈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개인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경우가 많으며, 한번 가정에서 이탈된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이탈-복귀를 반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 주기가 개인마다 천차만별이고 이러한 상황을 일일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음

- 다만, 경찰청 실종·가출 현황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 규모를 유추할 수 있음

< 9~19세 경찰청 실종·가출인 신고접수 현황(경찰청) >

(단위 :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계	23,783	20,875	23,133	28,643

○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로 유입된 청소년에 대한 위기스 크리닝 결과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고,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통계 관리를 하고 있음

(단위 : 천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지원청소년수	168	123	145	146

[정책조정]

2-1.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학대피해청소년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학대피해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정책은 어떠합니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체계와의 연계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학대피해청소년을 청소년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력을 통해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
 - 또한 청소년쉼터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체계*와 연계하여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짐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체계>

- (학대 신고 대응)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사례 여부를 판단함
 - (일시보호) 아동학대 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 판단될 경우 피해아동을 행위의심자로부터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일시보호 하도록 함
- (회복지원) 지자체는 아동학대 사례 판단 후 사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교육 등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
 - (보호체계 변경)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보호체계로 연계하여 친인척 보호, 가정위탁, 시설 보호 등 보호조치를 진행할 수 있음

2-2.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은 어떻게 조정·연계되며,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청소년정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부처와 청소년 등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정책 분야별 시책, 정책 분석·평가 등 주요한 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
- 또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 아동(「아동복지법」 상 18세 미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함
- 부처 간 정책 관련 연계·협력이 필요한 경우 사전 안건 조율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필

요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 ex) 청소년정책위원회의 경우 안건 상정 시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통해 사전 검토·조율이 이뤄지고 있으며 실무위원회에 복지부(국장급)가 포함되어 있어 의견개진 등 가능

[자립 지원]

3-1. 2024년 4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며,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기존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포괄적 규정을 근거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을 추진함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3(자립지원) 신설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되었음

○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최장 5년간 지급하고 있으며

-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주거(국토부 / LH공공임대주택), 취업(고용부 /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등), 교육(교육부 / 장학금, 기숙사)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아울러 민관협력을 통해 자산형성(자립지원적금, 경제·금융교육), 맞춤형 일경험(기업 인턴십), 도시락 지원 등도 이루어지고 있음

3-2.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립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은 어떻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떠합니까?

○ 자립지원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4-1. 청소년의 주거권에 관한 정책 현황은 어떠합니까? 청소년기의 연령별(미성년기 청소년 포함)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 보장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9~24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의뢰받는 청소년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쉼터’ 또는 지역사회 내 가용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음
- 연령별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현황
 - (청년전세·매입임대주택)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공급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건설임대주택) 18세 미만 청소년도 신청 가능

4-2.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정책과 관련해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향후 추진될 계획이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연계를 기반으로 경제적 지원, 소득·생계·금융지원, 교육·진학지원, 취업·훈련지원, 건강·일상지원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음

4-3. “모든 청소년이 시설이 아닌 가정환경 및 양질의 돌봄, 주거, 자립지원을 포함한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권(「청소년기본법」 제2조제1항, 제5조제3항 등)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선 계획은 어떠합니까?

- 여성가족부는 2004년부터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논의·제안할 수 있는 ‘청소년 특별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청소년참여포털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참여를 지원하고 있음
 - 2024년에는 청소년특별회의 관련, 각 지역 청소년이 참여하는 권역별 지역회의 운영을 통하여 중앙·지역 간 연계·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며, 지자체에서도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주요 청소년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청소년위원이

20% 이상 되도록 하는 등(청소년기본법 제10조 제3항)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력 중임

[기타]

5. 위 질의사항 외에 <아동·청소년 탈시설 목표 및 추진전략>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 추진전략과 관련해 각 부처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임